

## 2000회계년도

#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

검사대표위원      우 강 호

검 사 위 원      김 진 석

검 사 위 원      고 영 배

검 사 위 원      정 장 용

# 2000년 회계년도

## 평창군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의견서

평창군회의의장으로부터 평창군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검사위원 일동은 평창군의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하여 제법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1.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
- 지방재정법 제41조, 제42조, 제1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40조
- 평창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제31조
-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 2. 검사기간 : 2001. 5. 12 - 5. 31(20일간)

### 3. 위원별 검사분야

- 대표위원 우 강 호 : 결산총괄
- 위 원 김 진 석 : 일반회계세입, 재산 및 기금의결산
- 위 원 고 영 배 : 특별회계 세입세출, 채권, 채무의 결산
- 위 원 정 장 용 : 일반회계세출, 계속비, 이월비, 금고결산

### 4. 검사방법

-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합리성등에 주안 검사 실시
- 계수의 과오 여부를 증빙서류와 상호 대조검사

## 5.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

### 1) 세입분야

- 결산서와 징수부 대사
-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의 적정성
- 체납액 정리 및 미수납액 관리의 적정성
- 결손처분의 적정성
- 여유자금의 적절한 관리 및 이자수입의 증대노력

### 2) 세출분야





- 결산서와 지출장부의 대사
- 법제, 원칙등에 입각한 적절한 지출여부
-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의 적정 여부
- 예산전용 및 불용처리의 타당성
- 예비비 운영의 적정성
- 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 3)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 결산서와 세입징수부, 지출장부 대사
- 주택용자금 관리
- 국공유재산, 대부재산등 재산의 성실한 관리 여부
-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상태

6. 검사결과 및 의견서 : “별첨”과 같음

2001년 5월 31일

검사대표위원	우 강 호	
검사위원	김 진 석	
검사위원	고 영 배	
검사위원	정 장 용	

평창군수 귀하

## 2000회계년도 평창군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의견서

2000년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세입·세출 결산총괄

####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 '99 )	98,583,421,000	137,378,159,366	134,437,635,710	27,839,920	2,912,683,736
당해년도 ( 2000 )	119,009,698,000	141,658,385,467	138,272,587,525	25,496,720	3,385,797,942

#### 가. 세입결산 개요

- 2000년도 수납액 138,272,587,525원은 예산액의 116%로서 19,262,889,525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로 나타남.

#### ※ '99년도

- 수 납 액 : 134,437,635,710원 (예산액의 136%)
- 징수결정액 : 137,378,159,366원 (예산액의 119%)

##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년도(1999)	98,583,421,000	35,294,388,100	133,877,809,100	105,762,061,882
당해년도(2000)	119,009,698,000	19,955,231,980	138,964,929,980	101,912,457,020

이월액	불용액	잉여금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19,955,232,020	8,160,515,198	28,675,573,828	387,827,500	8,332,514,308
26,131,635,060	10,920,837,900	36,360,130,505	306,418,920	9,922,076,525

### 가. 세출결산의 개요

- 2000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7%가 증가한 119,009,698,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9,955,231,9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38,964,929,980원임.
- 지출액은 101,912,457,020원으로 예산현액의 73%로 나타났으며 이월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	이월사업비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년도 (1999)	133,877,809	124건	69건	50건	5건	15%
		19,955,232	12,549,824	6,418,803	986,605	
당해연도 (2000)	138,964,929	116건	76건	31건	9건	16%
		22,254,064	14,955,945	2,681,446	4,616,672	

- 3) 불용액은 예산의 7%에 해당하는 10,920,837,9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922,076,525원으로 예산현액의 7.1%임

## 2. 일반회계 세입세출

###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년 도 (1999)	91,135,772,000	123,265,965,801	120,553,433,921	27,839,920	2,684,691,960
당해연도 (2000)	107,849,988,000	127,795,107,677	124,649,030,227	25,496,720	3,146,077,450

#### 가. 세입결산 개요

- (1) 수납액은 124,649,030,227원으로 예산액의 116%이며, 징수결정액은 127,795,107,677원으로 예산액의 118%에 달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임.

※ '99년도

- 수 납 액 : 120,553,433,921원 (예산액의 132%)
- 징수결정액 : 123,265,965,801원 (예산액의 135%)

##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년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 년 도(1999)	91,135,772,000	29,076,620,990	120,212,392,990	96,941,593,437
당해년도(2000)	107,849,988,000	17,301,313,800	125,151,301,800	93,836,563,812

이월액	불용액	잉여금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17,301,313,800	5,969,485,753	23,611,840,484	380,112,000	5,930,414,684
22,254,064,330	9,060,673,658	30,812,466,415	306,418,920	8,251,983,165

###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107,849,98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25,151,301,800원임.
- 이월사업비는 총 116건에 22,254,064,330원으로 예산현액의 17%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년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 년 도 (1999)	120,212,393	113건 17,301,313	65건 12,082,324	44건 4,454,148	4건 764,841	14%
당해년도 (2000)	125,151,301	116건 22,254,064	76건 14,955,945	31건 2,681,446	4건 4,616,672	17%



### 3. 특별회계 세입세출

####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전 연 도 (1999)	7,447,649,000	14,112,193,565	13,884,201,789	0	227,991,776
당해연도 (2000)	11,159,710,000	13,863,277,790	13,623,557,298	0	239,720,492

#### 가.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은 13,623,557,298원으로 예산액의 122%이며, 징수결정액은 13,863,277,790원으로 예산액의 124%이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임.

#### ※ '99년도

- 수 납 액 : 13,884,201,789원 (예산액의 186%)
- 징수결정액 : 14,112,193,565원 (예산액의 189%)

## 2) 세 출

(단위 : 원)

구분 \ 연도별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수입대체경비)	예산현액	지출액
전년도(1999)	7,447,649,000	6,217,767,110	13,665,416,110	8,820,468,445
당해년도(2000)	11,159,710,000	2,653,918,180	13,813,628,180	8,075,893,208

이월액	불용액	잉여금	국도비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2,653,918,220	2,191,029,445	5,063,733,344	7,715,500	2,402,099,624
3,877,570,730	1,860,164,242	5,547,664,090	0	1,670,093,360

### 가. 세출결산의 개요

- 예산액은 11,159,710,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13,813,628,180원임.
- 이월사업비는 총 9건에 3,877,570,730원으로 예산현액의 35%에 해당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별	예산현액	이 월 사 업 비				비율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전년도 (1999)	13,665,416	11건 2,653,919	4건 467,500	6건 1,964,655	1건 221,764	19%
당해연도 (2000)	13,813,628	9건 3,877,570	3건 1,910,000	4건 223,718	2건 1,743,852	35%

#### 4.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 1) 기금

(단위 : 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1999)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00)
		계	수납액	지출액	
총 계	1,508,673,170	398,916,730	487,856,742	88,940,012	1,907,589,900
재해대책기금	188,237,540	88,949,850	88,949,850	0	277,187,390
재난관리기금	33,699,360	21,244,100	21,244,100	0	54,943,460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112,682,550	△2,416,710	7,583,290	10,000,000	110,265,840
생활보호기금	21,114,742	△21,114,742	766,440	21,881,182	0
노인복지기금	391,304,121	150,938,215	150,938,215	0	542,242,336
장애인복지기금	100,000,000	112,705,160	112,705,160	0	212,705,160
평창군장학기금	661,634,857	48,610,857	105,669,687	57,058,830	710,245,714

##### 가. 기금결산의 개요

-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7종으로서 기금현재액은 99년도 1,508,673,170원 보다 398,916,730원이 증가된 1,907,589,900원을 관리하고 있음.

##### 2) 채권

(단위 : 원)

회계별	계	이행기간도래액		이행기간미도래액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합 계	4,005,852,522	1,857,448,003	1,211,907,079	901,997,930	34,500,000
특별회계	주택사업	2,922,205,524	1,713,787,064	1,208,418,950	0
	농공지구조성	0	0	0	0
	주민소득지원	1,083,646,998	143,660,939	3,488,129	901,997,930

가. 보유채권 현재액은

- 1999년말 현재액 : 4,489,822,579원에서
- 2000년도에 705,569,990원이 발생하여
- 2000년도말 현재액은 5,081,489,579원임.

### 3) 채 무

○ 2000년도말 현재

(단위 : 천원)

회 계 별		계	원금	이자	기일도래미지급액
합 계		24,416,866	18,312,804	6,104,062	0
일 반 회 계		4,346,259	3,794,631	551,628	0
특 별 회 계	소 계	20,070,607	14,518,173	5,552,434	0
	상 수 도 사 업	17,354,729	12,910,714	4,444,015	0
	주 택 사 업	2,715,878	1,607,459	1,108,419	0

가. 평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 1999년도말 현재액 27,339,042천원에서
- 1999년도에 2,922,176천원을 상환하여
- 2000년도말 현재액은 24,416,866천원임.

### 4) 공유재산

○ 용도별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99년말 현재액	2000년말 현재액	증감(△)
용도별	합 계	59,144,831	66,602,818	7,457,987
행정 재산	계	24,256,770	32,178,872	7,922,102
	공공용재산	16,035,662	19,457,846	4,990,344
	공용 재산	8,052,355	12,552,273	2,931,758
	기업용재산	168,753	168,753	0
보 존 재 산		0	0	0
잡 종 재 산		34,888,061	34,423,946	△464,115

가. 2000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1999년말 현재액 59,144,831천원에서 7,457,987천원이 증가한 66,602,818천원으로

- 토지 123,775,000m<sup>2</sup> 55,601,721천원
- 건물 43,910,000m<sup>2</sup> 10,991,697천원
- 기타 (기계,기구).24건에 9,400천원 임

### 5) 물 품

(단위 : 천원)

정수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2000년말 현재액
			구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매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계	
961	수량	747	25	2	27	15	6	21	753
	금액	2,062,819	173,187	43,709	216,896	29,976	19,499	49,475	2,230,240

가. 200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999년말 현재액 2,062,819천원보다 167,421천원이 증가한 2,230,240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216,896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 상각 등으로 49,475천원이 감소함.

### 5. 세입세출외현금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2000년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계	858,159,517	163,953,460	3,088,869,892	2,924,916,432	1,022,112,977
군	548,948,266	265,713,313	2,537,446,893	2,271,733,580	814,661,579
읍 면	309,211,251	△101,759,853	551,422,999	653,182,852	207,451,398

가. 2000년도말 현재액은 1,022,112,977원으로 1999년도말 858,159,517원보다 163,953,460원이 증가함.

## 6. 검사결과

### ○ 총 평

- 2000년도 평창군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각종 장부 및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검사한 결과 관련 공무원들의 꾸준한 법규 연찬과 정확한 결산의 의지 및 노력으로 계수과오는 1건에 불과하였고, 재무운영의 적법성, 효율성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그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7.7%로 증가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자치단체의 관련공무원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재정보전금의 증액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겠음. 아울러 미수금은 전년대비 10% 감소하였으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

나. 세출분야에서는 사업비 확보이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사업비 예산편성 이후에는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예산이 부당하게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 또는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아래와 같은 부당, 부적정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음

### ○ 신규사업비 예산재배정 부당 및 당초예산 승인사업 추진 부진

- 봉평면노인복지관 진입로포장공사(사업비 15,000천원)을 추진함에 있어
  - 1) 일반적으로 각종사업의 예산재배정은 상반기나 하반기 초에 재배정을 완료하여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 2) 동절기인 11월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공기부족과 평창군의 동절기 기온을 감안할 때 시멘트의 양생(적은 10도~25도)등의 문제로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정상적 사업추진이 불가함이 예상됨에도 편성예산에 대한 불용처리 방안을 위해 명시이월 조치함은 부적정함.

- 대화위생매립장설치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1) 2000년도 사업물량인 5개 마을 지원사업비 10억원(마을당 2억원)을 마을별 세부사업계획이 선정되지 않아 명시이월되었으며,
- 2) 이월된 사업비에 대한 2001년 5월 결산검사현재까지 마을별 사업계획이 미책정되는 등 사업추진이 극히 저조함.

#### ○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예산변경 미실시

- 2000년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예산 481,296천원, 1차 추경시 854,074천원 총 1,335,370천원의 국비사업을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 1) 2000년 7월 7일 강원도로부터 사업물량 축소로 인해 사업비 감액(455,587천원)을 통보받았으나 최종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455,587천원에 대한 국비 미착급사례가 발생됨.

#### ○ 가공옥수수(칸베라콘)생산시설사업 포기

- 2000년도 지역특화사업인 가공옥수수생산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690,000천원(국비 345,000천원, 도비 103,500천원, 군비 241,500천원)으로 건물, 구축물, 기계시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 1) 사업자가 평창군(직영)으로 되어있어(당초신청) 직영사업 추진시 원료 확보에 따른 운전자금 과다 및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부족(고급기능인력)과 행정업무의 원료수급, 생산, 가공, 유통망구축 등 경쟁력이 취약하고
- 2) 사업후보지로 용도변경승인을 요청한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826-4번지(2,883㎡)의 용도변경승인불가(농림부)통보에 따라 부지확보가 어렵고
- 3) 평창군직영사업으로 추진시 특허권자(고종구)로부터 특허권 사용을 득해야 가공제품의 생산 가능하며 특허권 사용불가시 가공 신기술개발 및 특허등록 등이 요구되며 특허권자와의 만원 분쟁 우려되어 가공옥수수(칸베라콘)생산시설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 초래

# 지적사항 및 감사자 의견서



# 지 적 사 항 목 록

번호	제 목
1	지방세 체납(미수)액 일소대책 추진
2	군유재산관리(임대료 미징수) 철저
3	폐기물 수집수수료 미징수
4	대화위생매립장주변마을지원사업 추진부진
5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예산변경 미실시
6	가공옥수수(칸베라콘)생산시설사업 포기
7	봉평노인복지회관 진입로포장공사 부진
8	산불예방보상비 지급 부적정
9	상수도사용료 체납일소
10	국책사업시행으로 군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배분적정 여부 확인
12	채무결산보고서 수치지정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적 사항

- 번 호 : 1
- 제 목 : 지방세 체납(미수)액 일소대책 추진
- 현 황 : 별첨
- 문제점
  - '99년 대비 2000년도 세입결산 미수액을 비교하면 2000년도 총미수액은 968,216천원으로 '99년도의 총미수액 1,070,381천원에 비해 9.5% 감소하였으나, 고질적 체납인 자동차세는 '99년도에 268,645천원에서 2000년도에 352,109천원으로 전년대비 31%가 증가되었으며, 폐기물수집수수료는 전년도인 '99년도에 1,175천원에서 당해연도인 2000년도에는 4,115천원으로 전년대비 250%로 크게 증가되었고, 과태료는 전년도인 '99년도에 142,452천원에서 당해연도인 2000년도에 281,263천원으로 97%로 미수액이 증가되었음.

## □ 의 견

- 체납(미수)액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계도를 통해 체납(미수)액이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대의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임.

## 세입결산액 미징수액 대비 (1999-2000)

(단위: 원)

과 목	99년 미징수액	2000년 미징수액	99년 대비 (%)	증감 사유
계	1,070,381,250	968,216,140	10%	
주민세	359,305,620	69,000,670	81%	감소: 고액납세자성실납부
재산세	71,005,390	65,386,490	8%	감소: 납세자성실납부
자동차세	268,645,910	352,109,520	31%	증가: 징수율3%하락
종합토지세	79,155,900	63,014,240	20%	감소: 징수의지 강화
도시계획세	26,521,100	26,962,540	2%	
사업소세	12,486,330	7,379,610	41%	감소: 납세자 성실납부
국유재산임대	4,678,110	4,435,980	5%	감소: 부과액7%감소
공유재산임대	10,365,750	10,331,700	0%	
도로사용료	871,070	271,610	69%	감소: 부과액7%감소
소하천사용료	3,299,440	2,060,330	38%	감소: 부과액7%감소
관공업수입	57,774,780	73,179,230	27%	증가: 결산전결손처분 미이행
폐기물수집수수료	1,175,360	4,115,950	250%	증가: 부과액281%증가
국유재산매각수입	4,188,000	1,628,000	61%	감소: 부과액42%감소
공유재산매각수입	22,561,900	5,480,000	76%	감소: 납세자 성실납부
변상금	5,674,660	1,596,680	72%	감소: 부과액43%감소
과태료	142,452,330	281,263,590	97%	증가: 부과액48%증가
체납처분수입	219,600	-	100%	감소: 완전징수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적 사항

- 번 호 : 2
- 제 목 : 균유재산관리(임대료 미징수) 철저
- 현 황

구 분	과세물건 (원)			비 고
	계	대지	건물	
계	2,232,060	134,550	2,097,510	
미탄면장 관사	1,369,560	134,550	1,235,010	
대화면장 관사	862,500		862,500	

- 문제점

- IMF시대 예산절감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방관사운영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읍면장 관사에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지침이 개정됨에 미징수액이 발생하게 됨.

## □ 의 견

- 기 부과된 임대료는 징수하고, 일선 기관장인 읍면장 관사에 대하여는 통근거리에 상관없이 일선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임대료를 감면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연도	과목명	계좌번호	과세종류	과세물건	과세표준액	국세	지방세	합계	납기일자	보고서	페이지
연도	과목명	계좌번호	과세종류	과세물건	과세표준액	국세	지방세	합계	납기일자	SEIP321	
2110201-250-200001-000000	계정코드내역			100,000 이상							
2110201-760-200012-2-999999	실소주										
-310-200002-1-000023	미판면		미판면	미판면 장리 769-2	5,382,000	134,550	0	5,516,550	2001/03/31		
	평상군		미판면	장기부(대지)	0.00	0	0	0			
	미판면		미판면	미판면 장리	134,550	0	0	134,550	2001/01/02		
-310-200002-1-000024	미판면		미판면	미판면 장리 769-2	49,400,500	1,235,010	0	50,635,510	2001/03/31		
	평상군		미판면	장기부(건물)	0.00	0	0	0			
	미판면		미판면	미판면 장리	1,235,010	0	0	1,235,010	2001/01/02		
-330-200002-1-000033	군유임대		대화면	대화리1001-19(대) 116평방	0	302,950	0	302,950	2001/03/31		
	대화면		대화면	장기부(대지)	0.00	0	0	0			
	평상군		대화면	대화9리	302,950	0	0	302,950	2001/01/02		
-330-200002-1-000046	군유임대		진부면	대화리1001-102(대) 83평방	0	164,340	0	164,340	2001/05/17		
	평상군		진부면	장기부(대지)	0.00	0	0	0			
	진부면		진부면	송정리 석미아파트 102-601호	164,340	0	0	164,340	2001/01/02		
-232713	대화면		대화면	신라1175-15(전)면화-5579	0	107,890	0	107,890	2001/03/31		
	평상군		대화면	군유임대포(농경지)	0.00	0	0	0			
	대화면		대화면	신4리	107,890	0	0	107,890	2001/01/02		
-330-200002-1-00160	군유임대		대화면	대화리1012(주택) 59.97평방	0	862,500	0	862,500	2001/03/31		
	대화면		대화면	군	0.00	0	0	0			
	평상군		대화면	대화9리(편향판사)	862,500	0	0	862,500	2001/01/02		
-360-200002-1-00030	군유임대		진부면	상진부 254-5(대지)320평방미터	15,648,000	391,200	0	15,999,200	2001/03/31		
	진부면		진부면	2000.1.1-12.31	0.00	0	0	0			
	평상군		진부면	상진부 254-4	391,200	0	0	391,200	2001/01/02		
-370-200002-1-00003	군유임대		도암면	황계 279-28(355㎡)	18,389,000	459,720	0	18,848,720	2001/05/07		
	도암면		도암면	군유임대포(대지)	0.00	0	0	0			
	평상군		도암면	황계 323-2(1/3)	459,720	0	0	459,720	2001/01/02		
-1273511	도암면		도암면	황계 279-28(279㎡)	14,452,200	361,300	0	14,813,500	2001/04/30		
	평상군		도암면	군유임대포(대지)	0.00	0	0	0			
	도암면		도암면	황계 1리 3번	361,300	0	0	361,300	2001/01/02		
-370-200002-1-00005	군유임대		도암면	황계 279-108(120㎡)	9,048,000	226,200	0	9,274,200	2001/04/30		
	도암면		도암면	군유임대포(대지)	0.00	0	0	0			
	평상군		도암면	황계 1리 3번	226,200	0	0	226,200	2001/01/02		
-2273517	도암면		도암면	황계 335-2(㎡) 30㎡	4,650,000	112,700	0	4,762,700	2001/05/07		
	평상군		진부면	군유임대포(대지)	0.00	0	0	0			
	진부면		진부면	하진부리 120-1(1/3)화산칼라	112,700	0	0	112,700	2001/01/02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 적 사 항

- 번 호 : 3
- 제 목 : 폐기물 수집수수료 미징수
- 현 황

구 분	과 목	건수	금액 (원)	비 고
계			1,082,060	
미 탄 면	반입료	1	6,450	
방 립 면	"	2	5,000	
봉 평 면	쓰레기봉투	2	35,120	
도 암 면	반입료	2	490,200	
	쓰레기봉투	2	545,290	

### • 문제점

- 판매소에서 읍면에 매입요청시 납부고지서를 발행,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현품을 인계하여야 하나
- 현품을 고지서와 함께 불출함으로 인해 미징수가 발생함.

## □ 의 견

- 결산검사상 미수액이 4,115,950원이었으나 검사기간 중 확인결과 3,033,890원은 징수되어 미수액이 1,082,060원으로 감소되었으나 미수액에 대하여는 즉시 징수하여야 할 것이며,
- 판매시 금융기관 납부사실을 확인 후 현품을 인계하여야 할 것임.

# 미수납내역서

( 단 위 : 원 )

구 분	미납부자	과 목	금 액	비 고
합 계			4,115,950	
평창읍	이재춘	쓰레기(반입료)	14,000	3/13납부 ✓
미탄면	김형복	쓰레기(반입료)	✓ 6,450	미납
	행복슈퍼	쓰레기처리봉투	133,380	4/17납부 ✓
	보라상회	쓰레기처리봉투	501,770	4/3납부 ✓
방림면	이춘선	쓰레기(반입료)	✓ 5,000	미납
봉평면	삼강마트	쓰레기처리봉투	✓ 12,100	미납
	함마음상회	쓰레기처리봉투	✓ 23,020	미납
진부면	고병춘	쓰레기(반입료)	✓ 10,000	미납 2000.5.22납부
	김남호	쓰레기(반입료)	✓ 10,320	미납 2000.5.23납부
	윤석환	쓰레기(반입료)	2,000	미납 2000.5.30납부
	합동슈퍼	쓰레기처리봉투	49,620	미납 2000.6.30납부
	진부슈퍼	쓰레기처리봉투	810,400	미납 2000.9.20납부
도암면	영동산업	쓰레기(반입료)	438,600	미납 ✓
	1670부대	쓰레기(반입료)	51,600	미납 ✓
	아우네식당	쓰레기(반입료)	6,450	4/9납부 ✓
	최덕규	쓰레기(반입료)	6,450	4/9납부 ✓
	제이마트	쓰레기처리봉투	1,443,100	미납 2001.5.18납부
	원주상회	쓰레기처리봉투	545,290	미납
	장미슈퍼	쓰레기처리봉투	46,400	3/26납부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 적 사 항

- 번 호 : 4
- 제 목 : 대화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부진
- 현 황
  - 대화위생매립장설치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있어 총 사업비 30억원 중 2000년도 사업물량인 5개 마을시설비 10억원(마을당 2억원)을 마을별 세부사업계획이 선정되지 않아 명시이월
  - 마을별 시설사업(당초)
    - 대화2리 : 경로당 신축 1동 1층
    - 대화5리 : 경로당 신축 1동 2층(독서실, 운동실 등)
    - 대화8리 : 경로당 신축 1동 2층, 아스콘포장 4.85km
    - 대화10리 : 경로당 신축 1동 2층(회의실)
    - 하안미1리 : 경로당 및 마을회관 1동
- 문제점
  - 2001년 5월 결산검사현재까지 마을별 사업계획 미책정
  -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등 각종 업무추진 부진

## □ 의 견

- 마을별 사업추진대책회의 등을 개최, 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이 적극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강구



대화위생 매립장 운영 및 관리. 협약서 중  
일부 내용 변경 협약서 (2002. 10. 22.)

협약 내용	일부 변경 협약내용
<p>&lt;지역개발 사업비 및 관련 사업비&gt;</p> <p>1.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조례 의거 지역개발 사업비를 지원한다.</p> <p>1) "갑"은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2000년 10억원, 2001년 10억원, 2002년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다. 단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하도록 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군수가 책임진다.</p> <p>2) 지원 사업은 "을"이 자체적으로 결정 배분하고 배준기준을 관리위원회 규약 4조에 의하고 사업 추진과 사업비 집행은 대화면이 한다.</p>	<p>&lt;지역개발 사업비 및 장학, 주민 복리증진 기금 지원비&gt;</p> <p>1.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개발사업비 및 장학·주민복리증진기금지원비를 지원한다.</p> <p>1) "갑"은 총 30억원의 지역개발사업비 및 장학·주민복리증진기금지원비를 2000년 10억원, 2001년 10억원, 2002년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되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한다.</p> <p>2) 지역개발사업비와 장학·주민 복리증진 기금은 "을"이 자체적으로 결정 배분하고, 위 지원비중 지역개발사업비는 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집행은 대화면이 한다.</p>
<p>&lt;쓰레기 반입&gt;</p> <p>4) 반입차량은 매일 하절기 오전 7시와 동절기에는 오전 8시까지 1차 반입하고, 오후에는 하절기는 20~22시 동절기는 18~20시에 반입하여야 한다.</p> <p>6) 쓰레기 반입 진입로는 대화면 하안미리(반정교)~대화8리 번구동으로 진입하고 회차는 대화10리로 한다. 대화10리 마을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불구 하고 진입은 금지한다.</p>	<p>&lt;쓰레기 반입&gt;</p> <p>4) 반입차량은 매일 오전에는 10시까지 반입하여야 하고, 오후에는 16시 이후에 반입하여야 한다.</p> <p>6) 쓰레기 반입 진입로는 대화면 하안미리(반정교)~대화8리 번구동으로 진입하고 회차는 대화10리로 한다. 대화 10리 마을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불구 하고 진입을 금지하되 대화 10리 주민과 평창군간 불도 협의에 의거 진입할 수 있다.</p>
<p>&lt;매립장 관리&gt;</p> <p>1) 쓰레기 매립시 표면에는 1일 오전 8시까지 20cm 이상 복토를 해야하며, 법면을 포장재를 이용하여 완전 밀폐하여야 한다.</p>	<p>&lt;매립장 관리&gt;</p> <p>1) 쓰레기 매립시 표면에는 1일 오전 11시까지 20cm 이상 복토를 해야하며, 법면은 포장재를 이용하여, 완전밀폐를 하여야 한다.</p>
<p>&lt;협약 외 사항&gt;</p>	<p>&lt;협약외 사항&gt;</p>

##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사업계획

○ 총사업비 : 30억원

(2000년도:시설비)

- 대상마을 : 5개마을, 10억원(마을별 각2억원씩)
- 사업내용
  - 대화2리:경로당신축1동,1층
  - 대화5리:경로당신축1동,2층(독서실,운동실)
  - 대화8리:경로당신축1동,2층, 아스콘포장4.85km
  - 대화10리:경로당신축1동,2층:회의실
  - 하안미1리:경로당및마을회관 1동

(2001년도:민간자본보조) 협의체 발전기금 10억원

(2002년도) : 10억원

- 협의체발전기금, 5억원
- 대상마을 : 5개마을, 5억원 (마을별 각1억원씩)
- 사업내용
  - 대화2리
  - 대화5리(마을안길포장400m, 도수로정비400m)
  - 대화8리(간이상수도사업2,730m, 농경지정리사업)
  - 대화10리
  - 하안미1리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 적 사 항

- 번 호 : 5
- 제 목 :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예산변경 미실시
- 현 황
  - 2000년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예산 481,296천원, 1차 추경시 854,074천원 총 1,335,370천원을 편성, 사업추진
  - 2000년 7월 7일 강원도로부터 사업물량 축소로 인한 사업비 감액 (455,587천원)을 통보받고 최종 확정된 예산(879,783천원)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음.
- 문제점
  -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 등 변경이 있으시는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 조치하여야하나 감액 편성하지않아 예산결산에 따른 국비 미착금 사례 발생

## □ 의 견

- 향후 예산 변경 발생시 차기 추경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하여 보조사업결산에 따른 미착금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 철저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 적 사 항

- 번 호 : 6
- 제 목 : 가공옥수수(칸베라콘)생산시설사업 포기
- 현 황
  - 2000년 지역특화사업인 가공옥수수생산시설사업에 있어 사업비 690,000천원(국비 345,000천원, 도비 103,500천원, 군비 241,500천원)으로 건물, 구축물, 기계시설 등을 추진
  - 사업시행자가 평창군직영사업으로 되어있어 지역농협 또는 생산단체로 사업시행자 변경 건의하였으나 변경불가(농림부, 강원도)
  - 사업후보지(대화면 대화리 826-4번지 2,883m<sup>2</sup>)의 용도변경 승인 변경불가(농림부)로 부지확보 지난
  - 평창군 직영시 특허권자(고종구, 김종철)와 합의불가시 제조과정 등 분쟁 예상
- 문제점
  - 지역특화사업선정시 기초조사(입지조건, 품목, 기계설비 등)를 소홀히 하여 예산 및 시간 낭비

## □ 의 견

- 향후 사업추진시 면밀한 사전 검토 후 추진

≡ '2000년 지역특화 공모사업 ≡  
가공옥수수(칸베라콘)생산시설 포기사유서

□ 사업개요

- 사업명 : 가공옥수수(칸베라콘)생산시설사업
- 사업주관 : 도지사
- 사업대상(시행자) : 평창군(직영)
- 사업량 : 1개소
  - ⇒ 사업내용 : 건물, 구축물, 기계시설, 기타
- 사업비 : 690,000천원
  - ⇒ 국비 345,000천원, 도비 103,500천원, 군비 241,500천원

□ 그동안 추진상황

1. '2000년 지역특화사업 신청('2000. 1. 25)

- 추진개요(필요성)
  - 우리군 대체작목으로 특화하여 소득안정작목 정착
  - 가공시설 확보로 신선도(당도)유지기간 연장 및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2. 가공옥수수(칸베라콘)생산시설사업 확정 통보

⇒ '2000. 3. 28 (강원도지사)

- 예산확보(1회추경) : 448,500,000(국비+도비)  
※ 군비 미확보

3. 사업시행자 변경요청

- 일시 : 농어업정책과('2000. 4. 10), 유통특작과('2000. 6. 8)
- 내용 : 사업시행자가 평창군직영으로 되어 있어 지역농협  
농업인단체 등 생산자 단체로 사업시행자 변경요청

4. 사업시행자 변경 건의(농림부 방문)

○ 일 시 : '2000. 4. 25

○ 면담자 : 신성암(농림부 투자담당관실)

○ 내 용 : 사업시행자가 평창군 직영사업으로 되어있어 지역  
농협등 생산자 단체로 사업시행자 변경 건의

※ 사업시행자 변경불가 회신(농림부, 강원도 '2000. 6. 13)

5. 가공(제조방법)특허권 사용등 면담('2000. 4. 27)

○ 면담자 : 유보영(특허청 관리국 출원과 심사관)

○ 특허등록 : '99. 3. 17(등록번호 10-0201991)

○ 특허권자 : 고종구, 김종철(발명자:김종철, 심사관:정제운)

○ 특허사용 : 특허권자와 협의사용(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와 합의불가시 제조과정등 분쟁 예상

6. 가공(제조방법) 및 시설설비등 신기술 면담('2000. 6. 19)

○ 면담자

· 가공분야 : 김동만박사(한국식품개발연구원 유통저장팀)

· 기계분야 : 박노현박사(한국식품개발연구원 공정개발팀)

○ 내 용 : 신기술개발 의뢰시 35백-40백만원의 개발부담금과  
약 1년의 연구개발 기간소요

7. 진공포장, 살균기계 견학 및 면담('2000. 7. 5)

○ 고온조리 및 살균기계

- 장 소 : 서울 무역센터(무역박람회장)

- 면담업체 : (주)慶韓(대표 한영우)

- 내 용 : 「HAPPY700 콘」 고압조리 및 살균처리 면담

※ 일본 NISSEN과 기술제휴제품인에어스팀식 고온 고압조리  
살균기계로 레토르트 식품생산

○ 진공포장기 및 포장제

- 면담업체 : (주) 위프로(김종한)

- 내 용 : 고온고압 진공포장 국내제품으로 가능함(단 일본 수출시 일본포장제, LG+일본제휴 제품사용여부등 수입국과 협의 결정)

8. 진공포장기 및 살균기계 외자구매 면담('2000. 8. 3)

- 면담자 : 외자구매과(이기호 행정사무관, 전찬한 전기사무관)
- 내 용 : 레드르토식품 생산에 따른 살균기계 및 포장기계 외자 구입면담

9. 부지확보 추진

- 위 치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826-4번지(2,883m<sup>2</sup>)
- 소유자 : 대화농업 협동조합(대화농협 사용승락)
  - ※ 대화농협 농지취득시 작목개발연구 및 보급 시험포 사용 조건 농림부장관 승인('99. 9. 14)
  - ※ 용도 변경승인 요청('2000. 8. 18) ⇒ 승인불가통보(9. 8)

□ 문제점

1. 사업자가 평창군(직영)으로 되어 있어 직영사업 추진시 다음 사항이 우려됨.

- ① 부지매입 및 원료구입(농가계약제배)에 따른 고정 및 운전 자금과다
- ②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부족(고급 기능인력 및 잡부)
- ③ 평창군 직영사업 추진시 경영능력 한계(행정업무외 원료수급, 생산, 가공, 유통망 구축 등 경쟁력 취약)

2. 가공(제조방법)특허에 따른 특허권 사용

① 특허내용

- 발명명칭 : 스위트콘의 제조방법 및 그방법에 의해 제조된 스위트콘 특허
- 특허출원 : '96. 5. 7(10-1996-001765)
- 특허등록 : '99. 3. 17(10-0201991)

- 특허권자 : 고종구, 김종철

- 발명자 : 김종철

② 특허권자로부터 특허사용권을 득한후 가공제품 생산 가능

③ 특허권자와 협의 불가능시 신기술 개발등이 요구됨

※국내 유일의 특허이며 일본은 가공제품이 전국에 유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공제품의 생산 및 유통실적 없음

※고종구(특허권자)민원제기(통고서제출 '2000. 8. 20)

- 내용 : 본인은 위사업의 창업자이며 특허권자로 사업 최적 임자이며 필요시 정치, 행정,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음.

### 3. 가공시설 부지 미확보

① 제1후보지(대화리826-4)의 용도변경 불가로 부지확보 지남

### 4. 가공시설 관리 및 운영 업체선정

① 대화농협 선정시

- 농가계약재배로 원료 수급조절 및 유통망 기확보

- 기존 농협시설활용 시설 및 생산비 절감

※ 가공에 따른 신기술 개발 및 특허권자의 민원발생 우려

② 특허권자 선정시

- 대화농협 원료 납품 가공 ⇒ 납품협의 불가시 농가계약 재배등 원료 수급대책이 요구됨

- 가공(제조)방법 특허등록 으로 레토르트 식품생산

※ 「HAPPY700 콘」 농가 계약생산 유통중인 대화농협과 경쟁유발 및 민원발생 우려



## □ 평창군 종합의견

1. 사업자가 평창군(직영)으로 되어있어 직영사업 추진시 원료 확보에 따른 운전자급 파다 및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부족(고급기능인력)과 행정업무외 원료수급, 생산, 가공, 유통망 구축 등 경쟁력 취약
2. 사업 후보지로 용도 변경승인을 요청한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826~4번지 (2,883㎡)의 용도변경승인불가(농림부)통보에 따른 부지확보 지난
3. 평창군 직영사업 추진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사용을 특해야 가공제품 생산 가능
  - ※ 특허권 사용불가시 가공 신기술개발 및 특허등록 등이 요구되며 특허권자의 민원우려
  - ※ 특허권자 민원제기 (통고서 제출)
    - 민원인 ⇒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강인구(고종구 대리인)
    - 민원일 ⇒ '2000. 8. 26(서울종합법률사무소)
    - 민원내용 ⇒ 본인은 위사업의 창업자이며 특허권자로서 사업 최적임자 이며 필요시 정치, 행정,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음.

위 일련의 현안으로 인하여 가공옥수수(칸베라콘) 생산시설사업 포기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01. 5. 17.

농업경영과 지방농업주사 신 창 덕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적 사항

- 번 호 : 7
- 제 목 : 봉평 노인복지회관 진입로포장공사 부진
- 현 황
  - 봉평노인복지회관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비(15,000천원)가 2000년 11월 15일 재배정되어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 문제점
  - 예산 배정에 동절기에 배정되어 사업시행이 불가능
  - 편입용지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업추진 지연

## □ 의 견

- 사업비가 조기에 재배정되도록 사업추진
-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비를 추경에 확보, 조속히 추진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 적 사 항

- 번 호 : 8
- 제 목 : 산불방지 보상비 지급 부적정
- 현 황
  - 2000년 산불방지활동 리장보상금이 185개 행정리(미탄면 수청리 제외)에 18,500천원의 예산 배정
- 문제점
  - 봉평면 유포2리는 행정리는 존재하나 리장이 없음에도 예산배정
  - 봉평면 창동2리는 산림인접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활동비 100천원 미지급, 타읍면과의 형평성 미고려

## □ 의 견

- 산림인접지 행정리가 많은 4개읍면(평창,대화,진부,도암)은 산불방지에 방활동비를 지급하였으나 봉평면 창동2리는 산림인접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형평성을 고려치 않은 행정처리로서 봉평면 창동2리 이장에게도 활동비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배<sup>정</sup>청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적 사항

- 번 호 : 9
- 제 목 : 상수도사용료 체납 일소
- 현 황

가. 읍면별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

(단위 : 원)

계	평창읍	미탄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도암면
41,658,830	9,014,080	2,254,250	4,262,300	3,295,160	2,480,710	13,473,210	6,879,120

나. 상수도사업관련 채무현황

(단위 : 천원)

'99년말 현재액	당해연도 상환액	2000년도말 현재액	비고
18,669,028	1,314,299	17,354,729 (원금 12,910,714)	4,444,015 (만기이자)

### ● 문제점

- 읍면 수도검침, 군 부과·징수, 군금고 취급기관 수납등 다원화로 인한 체납자 집중관리 결여

## □ 의 견

- 양질의 식수 공급을 위해 상수도시설사업에 투입된 채무액(전체 채무의 71%)을 조기 상환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 필요
-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적 사항

- 번 호 : 10
- 제 목 : 국책사업시행으로 군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도암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관련)
- 현 황
  - 위 치 :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 사업량 : 시설용량 3,500톤/일, 차집관로 7.7km
  - 사업비 : 10,000백만원(양여금 53%, 기금 30%, 군비 17%)

구분 년도	재 원 별(백만원)				비고
	계	양여금	기금	군비	
소계	10,000	5,300	3,000	1,700	
1999	357	357	-	-	용역비
2000	1,660	1,060	600	-	이 월
2001	2,777	1,472	833	472	
2002	5,206	2,411	1,567	1,228	

- 하수처리장 설치인가 신청 : 2001. 6월초 ⇒ 환경부
-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발주 : 2001. 7. 15

### ● 문제점

- 양여금지원사업에 따른 군비 의무부담금 과중
- 평창강 수계를 비롯한 각 읍면 수계에 연차적으로 오수정화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예상되어 군비 부담금 점증 예상
- 건설 후 관리 및 운영비 부담 과중  
(양여금(70%), 지방비(30%), 지방비는 7(기금) : 3(군비), 운영비 총액 9%부담)

## □ 의 견

- 수도권 식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거 양여금 지원 비율개선(자치단체부담금축소)을 관계 부처에 공동건의 대처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적 사항

- 번 호 : 11
- 제 목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배분적정 여부 확인
- 현 황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시군	총액	구성비 (%)	부문별 사업				비고
				공공시설사업	%	주민복지지원	%	
1999	평창군	45,000	18	35,000	17	10,000	20	
	강릉시	209,700	82	169,700	83	40,000	80	
2000	평창군	41,600	17	31,600	16	10,000	20	
	강릉시	206,000	83	166,000	94	40,000	80	

### • 문제점

- 강릉수력발전처에 속한 강릉수력발전소주변지원사업내 평창수하댐주변지원사업비 배분 부적정(4 : 1)
- 주변 인구 및 면적을 기준으로 배분(상대적 불리한 기준 적용)

## □ 의 견

- 지원사업비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확인에 의한 대처
- 수하댐건설 당시 편입 농경지로 인한 고랭지농작물 감소 및 건설 후 주변농경지 폐쇄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하여 관계 부서에 건의, 인접 시군과의 상대적 불리한 지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동대처함이 효과적이라 사료됨.

# 검 사 자 의 견 서

## □ 지 적 사 항

- 번 호 : 12
- 제 목 : 채무결산보고서 수치 정정
- 현 황 : 별첨(수정내용 포함)
- 문제점
  - 당초 제출 계수인 당해연도 채무상환액(원금 1,661,750천원, 이자 1,256,329천원, 총 2,918,079천원)은 2000. 1. 1 ~ 2000. 12. 30 까지의 상환액이며,
  - 차액 4,097,440원(원금 2,263,470원, 이자 1,833,970원)은 2001. 1. 9 상환되어 착오 발생
  - 상수도 및 주택사업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확인미흡으로 착오발생
  - 예산부서의 채무결산은 1월초 실시

## □ 의 견

-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대조 수치 정정

# 채 무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 . 전년도말 현재액 27,339,042천원에서  
2,922,176
- . 당해년도에 2,918,079천원이 감소하여
- .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4,420,963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계별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A)			당 해 년 도 증 감 액 (B)									조정액(C)			당해년도말 현재액(D)			기말도래 미지급 액	
	계	원금	이자	계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소계	원금	이자	소계	원금	이자	소계	원금	이자								
합 계	27,339,042	19,976,817	7,362,225	24,922,176 △2,918,079	16,614,013 △1,661,750	21,258,823 △1,256,329	0	0	0	2,922,176 2,918,079	1,661,013 1,661,750	1,258,163 1,256,329	0	0	0	24,420,963 24,420,963	18,315,067 18,315,067	6,104,896 6,105,896	0	
일반회계	5,400,267	4,692,541	710,726	4,107,008 △1,057,604	2,899,971 △898,193	4,157,098 △159,411	0	0	0	1,057,008 1,057,604	898,193 898,193	159,098 159,411	0	0	0	4,344,663 4,345,663	3,794,631 3,794,348	551,625 551,315	0	
특별회계	소 계	21,935,775	15,284,276	6,651,499	21,865,168 △1,860,475	17,661,102 △763,557	21,099,465 △1,006,918	0	0	0	1,860,168 1,860,475	1,103,763 763,557	1,099,065 1,096,918	0	0	0	20,070,609 20,075,300	14,520,173 14,520,719	5,552,436 5,554,581	0
	상수도	18,669,028	13,398,564	5,270,484	18,314,299 △1,314,096	14,081,850 △487,964	18,261,449 △826,132	0	0	0	1,314,299 1,314,096	487,964 487,964	826,132 826,132	0	0	0	17,354,932 17,354,932	12,910,600 12,910,600	4,444,332 4,444,332	0
	주택	3,266,747	1,885,712	1,381,035	3,550,869 △244,122	3,579,252 △275,593	2,837,916 △270,786	0	0	0	550,869 548,379	279,252 275,593	272,616 270,786	0	0	0	2,715,478 2,720,368	1,609,459 1,610,119	1,106,019 1,110,249	0



【종류별 채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감액(B)									조정액(C)			당해년도말 현재액(D)			기말도래 미지급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소계	원금	이자	소계	원금	이자	소계	원금	이자							
합계	27,339,042	19,976,817	7,362,225	△2,922,176 △2,918,079	△1,664,013 △1,661,750	△1,258,163 △1,256,329	0	0	0	2,922,176 2,918,079	1,664,013 1,661,750	1,258,163 1,256,329	0	0	0	24,420,963	18,315,067	6,105,896	0
지방채	27,339,042	19,976,817	7,362,225	△2,922,176 △2,918,079	△1,664,013 △1,661,750	△1,258,163 △1,256,329	0	0	0	2,922,176 2,918,079	1,664,013 1,661,750	1,258,163 1,256,329	0	0	0	24,420,963	18,315,067	6,105,896	0
일반회계	5,403,267	4,692,541	710,726	△1,057,008 △1,057,604	△899,910 △898,193	△159,098 △159,411	0	0	0	1,057,008 1,057,604	899,910 898,193	159,098 159,411	0	0	0	4,345,663	3,794,348	551,315	0
특별회계	21,935,775	15,284,276	6,651,499	△1,865,168 △1,860,475	△764,103 △763,557	△1,099,065 △1,096,918	0	0	0	1,865,168 1,860,475	764,103 763,557	1,099,065 1,096,918	0	0	0	20,075,300	14,520,719	5,554,581	0

【상환재원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년도 증감액(B)									조정액(C)			당해년도말 현재액(D)			기말도래 미지급 이자
	계	원금	이자	계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소계	원금	이자	소계	원금	이자	소계	원금	이자							
합계	27,339,042	19,976,817	7,362,225	△2,922,176 △2,918,079	△1,664,013 △1,661,750	△1,258,163 △1,256,329	0	0	0	2,922,176 2,918,079	1,664,013 1,661,750	1,258,163 1,256,329	0	0	0	24,420,963	18,315,067	6,105,896	0
지방채	27,339,042	19,976,817	7,362,225	△2,922,176 △2,918,079	△1,664,013 △1,661,750	△1,258,163 △1,256,329	0	0	0	2,922,176 2,918,079	1,664,013 1,661,750	1,258,163 1,256,329	0	0	0	24,420,963	18,315,067	6,105,896	0
지방비	5,403,267	4,692,541	710,726	△1,057,008 △1,057,604	△899,910 △898,193	△159,098 △159,411	0	0	0	1,057,008 1,057,604	899,910 898,193	159,098 159,411	0	0	0	4,345,663	3,794,348	551,315	0
실수요 지부담	21,935,775	15,284,276	6,651,499	△1,865,168 △1,860,475	△764,103 △763,557	△1,099,065 △1,096,918	0	0	0	1,865,168 1,860,475	764,103 763,557	1,099,065 1,096,918	0	0	0	20,075,300	14,520,719	5,554,581	0

##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평 창 군 】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관련부서
1	지방세 체납(미수액)일소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9대비 2000년도 세입결산결과 미수액은 968,21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5% 감소하였으나</li> <li>-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31% 증가된 352,109천원이며</li> <li>- 과태료는 전년대비 97% 증가된 281,263천원임</li> <li>• 징수독려와 계도를 통해 체납액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과시점에서 정확한 근거과세, 현황부과 원칙에 의거 체납 최소화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li> <li>- 부과후 체납사유 분석, 자료 재정비 및 독촉 고지</li> </ul> </li> <li>• 당해 기분 과세액은 당해 기분에 100% 징수도록 최대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기전 납부홍보</li> <li>- 독촉고지서 발송후 전화납부, 독려 및 기한내 신속한 체납처분</li> </ul> </li> <li>• 기 체납분에 대하여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체납 : 납부독려 징수</li> <li>- 고질(상습)체납 : 강력한 체납처분</li> <li>- 징수불가 체납 : 결손처분 실시</li> </ul> </li> </ul>	재무과 (징수)
2	균유재산관리(임대료 미징수)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관사운영개선대책으로 읍면장 관사 임대료 징수토록 개정, 미탄면장 및 대화면장 관사 임대료 미징수</li> <li>- 미탄면장 관사 : 1,369,560원</li> <li>- 대화면장 관사 : 62,500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부 독촉 공문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 13330-2003(6.12)</li> <li>- 6. 20까지 납부(고지서 발생)</li> </ul> </li> <li>• 기한내 미납부 시 봉급압류 확행</li> </ul>	재무과 (관재)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치 리 결 과	관련부서
3	폐기물수집수수료 미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소에서 읍면에 매입요청시 납부고 지서를 발행,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인계하여야 하나 현품을 고지서와 함께 불출함으로 인해 미징수액이 발생</li> <li>- 미탄면 : 6,450원 방림면 : 5,000원</li> <li>- 봉평면 : 35,120원 도암면 : 1,035,490원</li> <li>• 판매시 금융기관 납부사실 확인 후 현품을 인계하고, 미징수액에 대하여는 즉시 징수토록 해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림면 반입료 징수 완료</li> <li>- 2001. 5. 17 5,000원</li> <li>• 봉평면 쓰레기봉투료 징수 완료</li> <li>- 2001. 5. 19 12,100원</li> <li>- 전산입력착오 1건 23,020원 감액처리</li> <li>• 미탄면, 도암면의 반입료 및 쓰레기봉투료 1,041,940원은 6월중 전액 징수토록 독려하며, 판매시 금융기관 납부사실 확인 후 현품 인계토록 지도</li> </ul>	환경복지과 (미탄면,도암면)
4	대화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위생매립장설치주변마을지원사업비 30억중 2000년도 사업물량인 5개마을 10억원이 마을별 세부사업계획이 선정되지 않아 전액 명사이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별 세부사업계획 확정</li> <li>- 대화2리 : 경로당 1동 26평 부지매입 990m<sup>2</sup></li> <li>- 대화5리 : 경로당 및 운동실 40평(1층) 부지매입 659m<sup>2</sup></li> <li>- 대화8리 : 경로당 25평, 창고 25평 부지매입 990m<sup>2</sup></li> <li>- 대화10리 : 마을회관 40평, 창고 20평 부지매입 1,714m<sup>2</sup></li> <li>- 하안미1리 : 경로당 및 마을화관 30평 구건물철거 1동 35평</li> </ul>	환경복지과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관련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선정 및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 강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화위생매립장협약관리위원회 및 마을 대표자와 사업추진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2001. 12. 31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li> </ul>	
5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예산 변경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년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예산 481,296천원, 1회 추경에 854,074천원을 확보, 총1,335,370천원으로 추진하던 중 강원도(2000.7.7)로부터 사업 물량 축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455,587천원) 통보를 받았음에도 최종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455,587천원의 국비 미착금 사례 발생</li> <li>•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 등 변경이 있을 시 추경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토록 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량 및 예산액 변경시 추경예산 편성에 이를 즉각 반영하여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li> </ul>	농업경영과
6	가공옥수수(칸베라콘)생산 시설사업 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특화사업 선정시 기초조사(입지조건, 품목, 기계설비 등)를 소홀히 하여 예산 및 시간 낭비 초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사업 추진시 사업의 조건, 특성, 향후 전망 등 철저한 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해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li> </ul>	농업경영과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관련부서
7	봉평노인복지회관 진입로 포장공사 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평노인복지회관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비(15,000천원)가 2000. 11. 15 재배정되어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li> <li>• 편입용지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업추진 지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사업추진시 조기착공토록 제반 노력 할 것임.</li> <li>• 편입토지보상금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시 편성요구</li> </ul>	봉평면
8	산불방지 보상금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평면 유포2리는 행정리는 존재하나 리장이 없음에도 예산배정</li> <li>• 봉평면 창동2리는 산림인접지가 아니라는 사유로 활동비 100천원을 지급하지 않아 타 읍면과의 형평성 미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산불예방활동비 지급시 타읍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음.</li> </ul>	봉평면
9	상수도사용료 체납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식수공급을 위해 상수도시설사업에 투입된 채무액(평창군 전체 채무의 71%)을 조기상환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li> <li>- 상수도사용료 총액 : 41,568천원</li> <li>- 채무 총액 : 17,354,729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년도 체납액 일소 계획 시달 : 5. 15</li> <li>• 정수처분예고서 일제 발송.: 5. 30 ~ 6.10</li> <li>• 읍면 및 본청 직원 교체 징수 실시 - 6. 11 ~ 6. 22</li> <li>• 2차 안내문(최고장)발송 및 정수조치 예정 - 6. 25 ~ 6. 30</li> </ul>	도시경제과 (상하수도)

번호	제 목	지 적 사 항	치 리 결 과	관련부서
10	국책사업시행으로 군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도암하수종말처리장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여금지원사업에 따른 군비 의무 부담금 과중</li> <li>• 평창강 수계를 비롯한 각 읍면 수계에 연차적으로 오수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인한 군비 부담금 집중 예상</li> <li>• 오수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후 관리 및 운영비 부담 과중(운영비 총액 9%부담) (사업비 : 양여금 70% : 가금 20% : 군비 1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처리장운영비 중 군비 부담금 (9%-28백만원/년)에 대하여는 한전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강릉시와 공동대응)</li> <li>• 하수도사용료 부과로 군비 일부 충당 계획</li> </ul>	도시경제과 (상하수도)
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배분적정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릉수력발전처에 속한 강릉수력발전소 주변지원사업내 평창수하댐주변지원사업비의 배분 부적정(4:1)</li> <li>• 주변인구 및 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상대적 불리한 기준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릉수력발전처에 대해 배분기준 요구 (군, 의회, 국회의원)</li> <li>•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기준이 적용된 경우 수정토록 대처</li> </ul>	도시경제과 (지역경제)
12	채무결산보고서 수치 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년도 채무상환액 차액 발생, 원인 규명 수치 정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대조 수치 정정 완료</li> <li>- 당초 제출 계수인 당해연도 채무상환액은 2000. 1. 1~2000. 12. 31까지의 상환액으로 차액 4,097,440원은 2001. 1. 9 상환되어 차액 발생 (예산부서의 채무결산은 1월초 실시)</li> </ul>	기획실 (예산)